



제1592호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 고 제 3 3 5 호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2
- 공 고 제 3 4 5 호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3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3 5 8 호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2
및 의견수렴
- 공 고 제 3 7 0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153
권리행사 통보

고 시

- 고 시 제 2 4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57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35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1.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일자리정책과
2.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디어정보과
3.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4.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 무 과
5.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 무 과
6.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생활경제과
7.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8.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9.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10.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경관과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남 동 구

목 차

【 총 무 위 원 회 】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일자리정책과)	 7
■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디어정보과)	 19
■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9
■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49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61
■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생활경제과)	 71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	 87
■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101
■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	 113
■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경관과)	 143

【 총 무 위 원 회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424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19. 4. 16일 개소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3.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에 의거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수탁기관명 :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 위탁시설

시 설 명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꿈꾸는 청년 창업마을)					
개 소 일	2019. 4. 16.					
소 재 지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5, 구월테크노밸리C동 2층(구월동)					
규 모	188.2평 (621.09㎡)					
공간현황	사무공간		회의실	미팅룸	창업공방	기타
	9 (4인실)	1 (7인실)	1	2	1	7

- 위탁기간 : 2021. 4. 1. ~ 2023. 3. 31.(2년)
- 위탁사업비 : 330,000천원(※2021년 예산기준)
- 위탁내용 및 목적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 4차 산업을 주도할 기술혁신형 청년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 보고사항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그동안 진행사항
 - 종합지도·점검 실시완료 : 2020. 12. 21. ~ 12. 23.
 - 종합성과평가 실시완료 : 2021. 1. 11. ~ 1. 15.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재계약 결정

☐ 참고 자료

- 붙임1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1부.
- 붙임2 : 관련법령 1부.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330,000천원(※2021년 예산기준)
- 비용추계의 기간 : 2021년 ~ 2022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1년 ~ 2022년 (2년)
- 발생비용 : 66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 구비 330,000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정책기획국 일자리정책과장 김 병 선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330,000	330,000	-	-	-	660,000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330,000	330,000	-	-	-	660,000
재원 조달		330,000	330,000	-	-	-	66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자 채 수 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소 계	330,000	330,000	-	-	-	660,000
	지방세	330,000	330,000	-	-	-	660,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1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인건비(종사자3명), 운영비, 사업비, 기타		330,000
인 건 비	[월급여] - 사무국장:3,000,000원×1명×12월 - 운영팀장:2,600,000원×1명×12월 - 교육매니저:2,000,000원×1명×12월 [시간외수당] 4,824천원 [4대보험] 12,097천원 [퇴직적립금] 5,479천원 [코로나대책 지원금] - 카페점장:2,200,000원×50%×1명×12월 - 사회보험부담금:220,370원×50%×1명×12월		128,121
운 영 비	[시설운영비] 99,593,250원×1식	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홍보비 임차비 등)	99,594
사 업 비	[교육 및 지원 사업]37,000,000원×1식 [교육 및 창업지원 외 행사]21,000,000원×1식	프로그램 운영비	58,000
기 타	[위탁수수료](인건비+ 운영비+ 사업비)×5% [부가가치세](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수수료)×10%		44,285

[붙임1]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I 추진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

제16조(성과평가)

-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 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 남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종합성과평가 실시」

II 사업개요

- 위 탁 명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관 :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대표자 정윤희)
- 위탁기간 : 2019. 4. 1. ~ 2021. 3. 31.(2년)
- 총위탁금 : 612,412천원(2019년 : 274,000천원 / 2020년 : 338,412천원)
- 위탁사무
 -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운영
 - 창업 커뮤니티 환경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무
 - 창업지원 관련 교육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Ⅲ

성과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전반
- 평가기간 : 2019. 4. 1. ~ 2021. 3. 31.(2년)
- 평가일정 : 2021. 1. 11. ~ 1. 15.(5일간)
- 평가자 : 총 4명(관계공무원, 구의원, 교수, 타 시설 센터장)
- 평가방법 : 종합평가표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총100점)
- 결과활용 : 위탁사무의 개선 및 재위탁 또는 재계약 체결시 활용

□ 평가결과 : 평균 87점(우수)

연번	심사위원	사업운영비전 (10점)	사업관리 (40점)	사업성과 (50점)	총점/평균	비고
1	A	10	36	45	91	
2	B	7	31	41	79	
3	C	10	33	44	87	
4	D	8	35	48	91	
합 계		35	135	188	348/87점	

※ 평가기준 참고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배점(100)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 추진성과

○ 운영상 잘된 점

-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창업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매출 상승에 기여함

▷ 2019년 대비 매출 약 166% 상승

(2019년도 : 1,195,000천원, 2020년도 : 3,189,359천원)

- 각종 홍보자료 및 멤버십 운영을 통해 센터 홍보에 힘썼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적합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및 온택트 프로그램 제작·송출 등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함

▷ 온라인 창업 콘텐츠[꿈마을 열창로그] 제작 및 운영

유튜브 채널 업로드를 통한 창업 입문교육 실시

(총 4편 제작, 시청인원 : 372명)

- 여성기업관련 지원 및 홍보로 기존 입주기업 중 삶디자인교육연구소, 루세오라, 파고든 여성기업 인증 완료,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MOU 협약 체결 및 관련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남동구 여성친화정책 맞춤 행보로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운영상 개선점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축소 운영 및 폐지

▷ 2021년에도 코로나 여파 지속 예정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

- 행정사무 및 법령관련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센터업무 전반에 대한 인력 및 예산관리 등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지속적인 피드백 및 자체 교육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음

- ▷ 연 1회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상 문제점 확인 및 건의사항 청취
- 기존 센터 내 여성창업자 전용 공간 부재로 책임성 있는 여성친화 도시 과제추진 및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 ▷ 신규 입주기업모집 시 공방을 여성창업자 전용 공간으로 모집 및 운영 예정

○ 운영성과 검토 의견

- 협동조합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청년거점으로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청년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를 토대로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음
- 일정부분 코로나19 상황지속 및 예산부족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 개발 및 공모전 신청 등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며,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 취·창업지원에 힘써 연간 매출 약 32억을 달성하였고, 최초 센터 개소 준비 과정에서부터 참여 및 성장해온 성과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우수사례

- 입주기업 ‘(주)지금여기’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선정
- 입주기업 ‘(주)쉐코’ 해양유류쓰레기 회수로봇 아이템으로 SK이노베이션 ‘SKII임팩트 파트너링’ 파트너 업체 선정 및 5억원 투자 유치
- 입주기업 ‘행복하개’ 인천관광공사 관광벤처기업 선정



V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이의신청 및 의견수렴 : 2021. 1. 22.(금) ~ 1. 28.(목)
- 평가결과 확정 및 구 홈페이지 공개 : 2021. 1. 29.(금)
- 민간위탁기관 재계약 검토 보고 및 협약 체결
 - 구 상임위 임시회 보고 : 2021. 2월 중
 - 민간위탁기관 협약 체결 : 2021. 3월 중

[붙임2]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3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 여론 및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주민 참여로 소통 행정 도모
- 소셜미디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삭제
: 안 제24조 ~ 제26조, 제28조, 제29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앞에 “제4장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장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	<삭 제>
제24조(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 설치)	<삭 제>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삭 제>
1. 신규 행정콘텐츠의 발굴, 소	

설채널의 개설 및 폐지 등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시책의 효율적인 주민전달 및 이해촉진 방안

3.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소셜미디어상의 여론 및 의견수렴 방안

4. 소셜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소셜기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6. 주민 행정참여 관련 정책제안 및 의견제시

7.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셜미디어 기반의 구정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삭 제>

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예산과장, 미디어정보과장으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소셜미디어·언론·주민자치 및 구정운영 등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추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미디어·콘텐츠 학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내 언론 관련 시민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셜업무 담당이 된다.

⑥ 삭 제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 회의
는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하기 위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셜미디어를 기반
으로 한 온라인 회의 개최를 원
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오프
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
다.

③ 삭 제

④ 삭 제

제29조(활동지원) 구청장은 위원
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교육, 견학 등
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

[참고자료]

□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구청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예산 집행 내용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25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복무선서,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4조)
- 근무기강의 확립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서류보관, 당직·비상근무, 검임·파견근무, 복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10조, 안 제12조)
-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검임) 및 제30조의4(파견근무), 제47조 (복무 선서), 제59조(위임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제7조의7(특별휴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

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

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④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성공적인 업무수행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

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⑥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제5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들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5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복무 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26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조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 단장의 임무(안 제5조)
-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지원단의 설치장소(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하거나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본부장은 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단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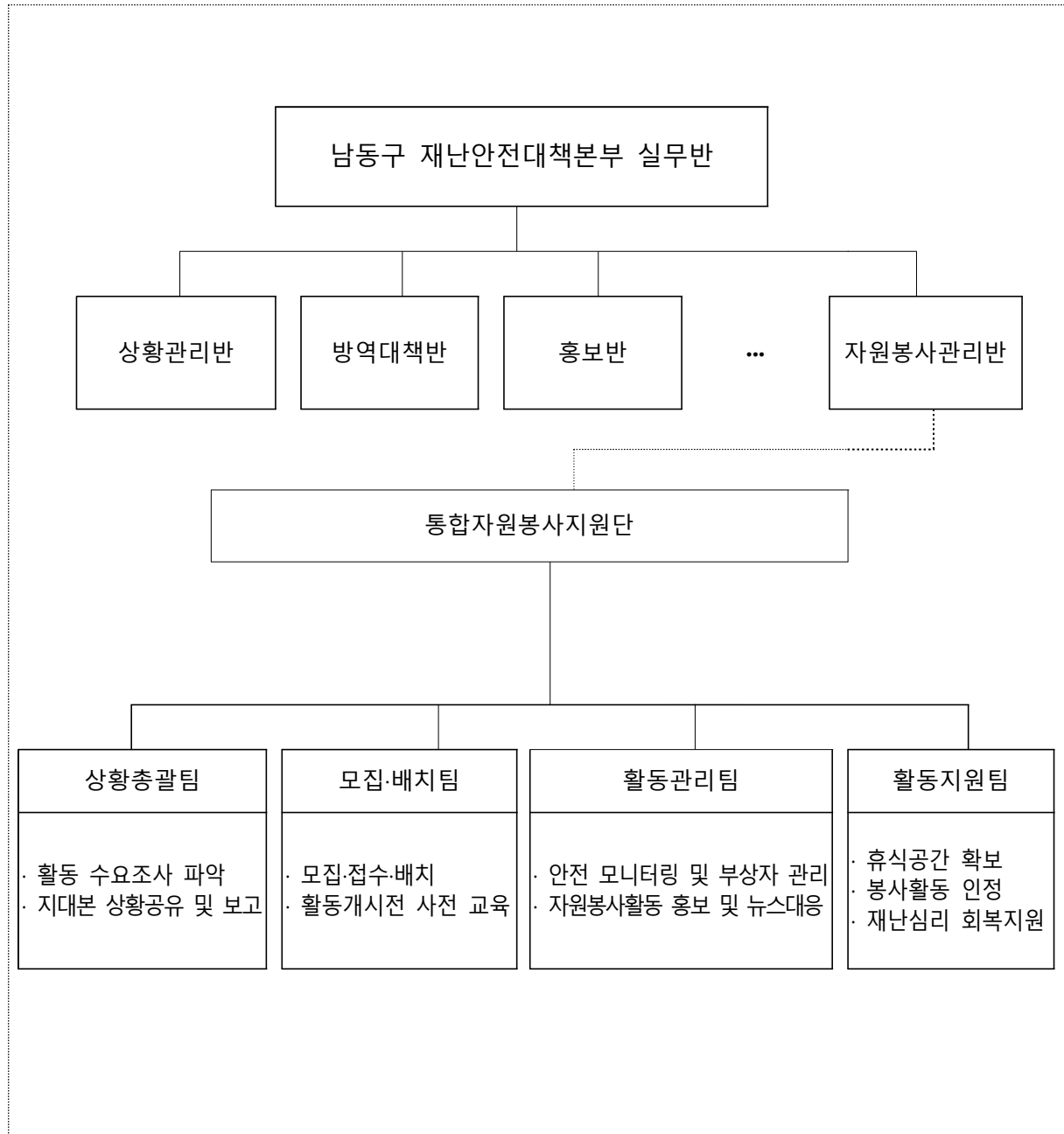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자원봉사센터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총괄팀	000 (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총괄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000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
	000 (자원봉사업무 담당자)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및 상황공유
모집· 배치팀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000 (자원봉사센터)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 모니터링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 활동 홍보
	000 (자원봉사단체)	▶ 피해복구활동 및 구호품 지원
활동지원팀	000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000 (자원봉사센터)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확인서 발급 등)
	000 (대한적십자사)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 미 영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간석3동 더불어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

의안 번호	2427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관련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 마련 등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명 :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커뮤니티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21년 ~ 2022. 12.
- 사업규모
 - 위치 : 간석동 37-4번지
 - 면적 : 대지 283m², 연면적 569.3m²
 - 규모 : 지상 4층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사업예산 : 총 20억원(시비 18억, 구비 2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합 계		2,000	613	1,387
시 설 비	부지매입비	-	-	-
	건 축 비	1,862	500	1,362
	설계용역비	100	100	-
감 리 비		30.8	9.9	20.9
시설부대비		7.2	3.7	3.5

※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전체 예산 : 총 40억

- 재원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소계	2,000	613	1,387
시비(90%)	1,800	563	1,237
구비(10%)	200	50	150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021. 4월 : 간석3동 37-4번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 착수
- 2021. 9월 : 간석3동 37-4번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설계용역 준공
- 2021.11월 : 간석3동 37-4번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착공
- 2022.10월 : 간석3동 37-4번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 준공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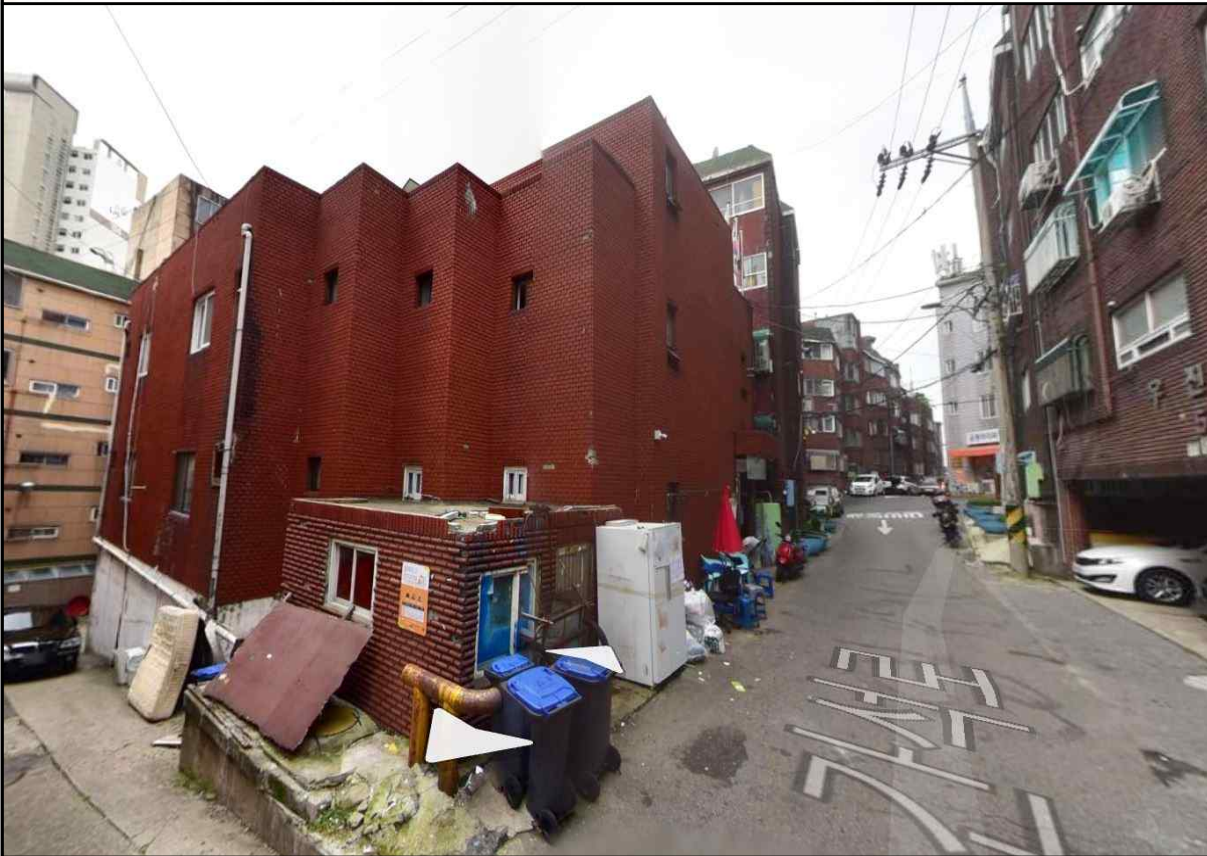
-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여 도시경쟁력 증진 기대
-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시 필수조건 충족 및 시설운영에 따른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유재산 (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간석3동 더불어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서명 : 도시재생과]

1. 재산의 위치	연면적	규모	주차대수	용 도	비고																		
간석동 37-4	569.3	지상4층	미정	노유자시설 제1종근생																			
2. 사업예산	2,000백만원																						
3. 건축비	1,900백만원(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 사업기간	2021. ~ 2022. 12.																						
5. 향후계획	○ 2021. 04 : 설계용역 착수 ○ 2021. 09 : 설계용역 준공 ○ 2021. 11 : 공사착공 ○ 2022. 10 : 공사준공																						
6.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rowspan="2">총사업비</th> <th rowspan="2">부지매입비</th> <th rowspan="2">설계비</th> <th colspan="4">건 축 비</th> </tr> <tr> <th>소 계</th> <th>공사비</th> <th>감리비</th> <th>시설부대비</th> </tr> <tr> <td>2,000</td> <td>0</td> <td>100</td> <td>1,900</td> <td>1,862</td> <td>30.8</td> <td>7.2</td> </tr> </table>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 축 비				소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00	0	100	1,900	1,862	30.8	7.2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설계비	건 축 비																				
			소 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00	0	100	1,900	1,862	30.8	7.2																	
7. 층별배치	○ 설계용역 완료 후 확정될 예정으로 경로당, 마을식당, 회의실, 마을 주택관리소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8. 위치도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현황)

[남동구]

(단위 : m², 천원)

구분	사 업 명	소재지	건수	면 적	공시지가	예정가격	사유	비고
합 계			1	569.3	-	2,000,000		
기 본 계 획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사업	간석동 37-4	1	569.3	-	2,000,000	간석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	하	여	백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건,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569.3	2,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신축)	토지 건물 기타				1	569.3	2,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추 정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	대	간석동 37-4	569.3	569.3	2,000,000	2022.10 월	커뮤니티센터 조성	소래로 633 남동구청장	건물 취득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28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용역점포로 분류)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 (안 제2조, 제3조)
-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 (안 제4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 (안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 (안 제6조, 제7조)
- 위원의 임기 등 : (안 제8조)
- 위원회 운영세칙 : (안 제9조)
- 조례의 준용 : (안 제10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남동구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 각 호
2.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
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 리 기 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골목형상점가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일(건축일)		소유형태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시장규모	토지 면적: m², 건물 연면적: m², 영업장 면적: m²,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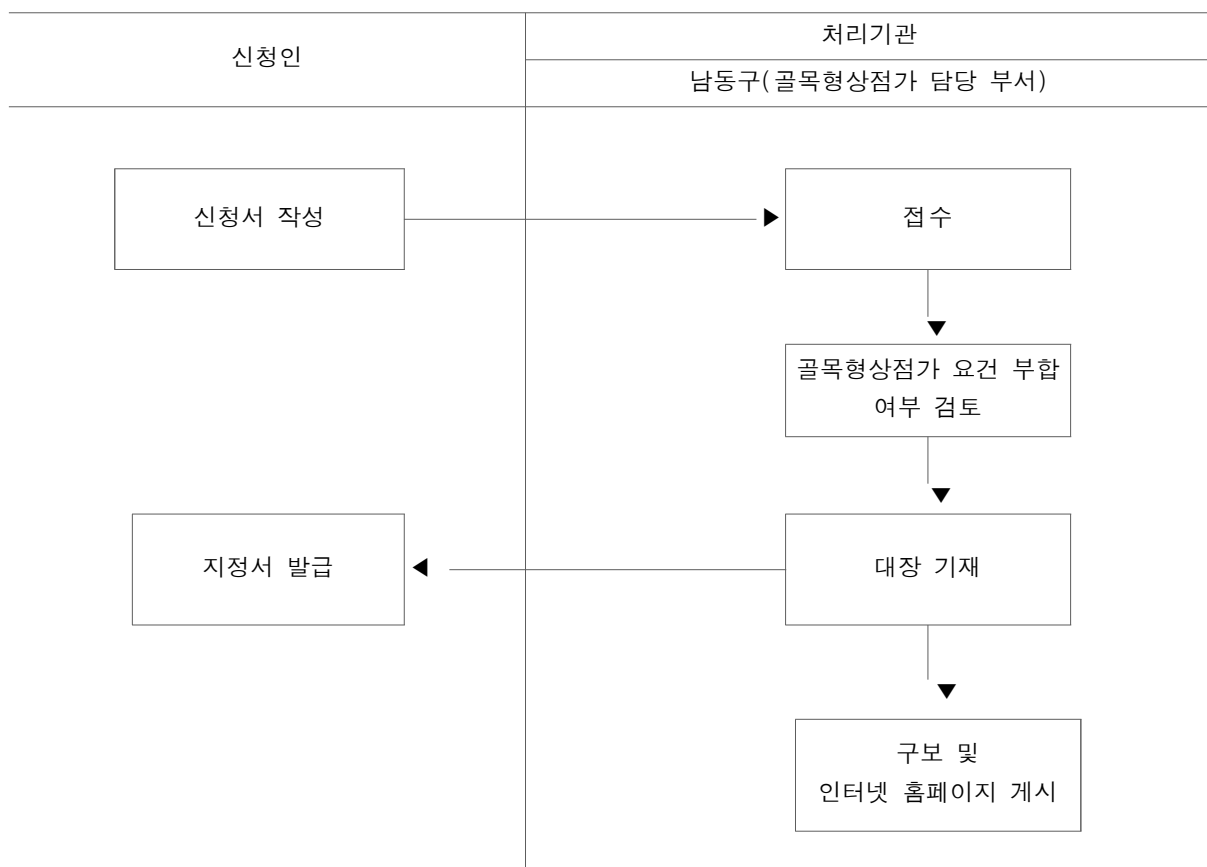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m²]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본 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선언적 내용이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는 대상 개소 수 및 다양한 공모 사업의 선정 여부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유동적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불가함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장 임덕수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1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4.]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외 도 시 위 원 회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29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 위탁시설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연면적 (층수)	정원	비고
하늘다솜	남동대로215번길 30 (고잔동)	773.4㎡ (지상1층)	85명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내용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어린이집 위탁 목적 및 시설 사항
 - 어린이집 위탁관리 기간 및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행위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3,695,933천원(5년간)

□ 동의 사항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 관련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결정

□ 참고 자료

- 참고1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1부.
- 참고2 : 관련법령(발체) 1부.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국공립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1년 보육사업안내(인건비·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기간 : 2021년 ~ 2025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1년 ~ 2025년(5년)
- 발생비용 : 3,695,933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3,316,023천원, 구비 379,911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636,250	649,329	662,801	676,676	690,967	3,316,023
	국시비보조금	636,250	649,329	662,801	676,676	690,967	3,316,023
세 출		709,184	723,742	738,737	754,181	770,089	3,695,93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709,184	723,742	738,737	754,181	770,089	3,695,933
재원 조달		709,184	723,742	738,737	754,181	770,089	3,695,933
의존 재원	소 계	636,251	649,329	662,800	676,675	690,968	3,316,023
	보조금	국비	293,817	302,360	311,159	320,222	1,557,116
		시비	342,434	346,969	351,641	356,453	1,758,907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72,933	74,413	75,937	77,506	79,121	379,910
	구 비	72,933	74,413	75,937	77,506	79,121	379,91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 (2021년 보육사업안내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아동인원 85명, 원장 1명, 조리사 1명, 교사 16명(영아·야간연장 5명, 유아반 3명, 장애아통합 2명, 연장보육 6명)		709,184
보육교직원 인건비		- 원장 : 3,504,500원×80%×1명×12월 - 교사(영아등) : 2,244,700원×80%×7명×12월 - 교사(유아) : 2,244,700원×30%×3명×12월 - 교사(연장) : 1,011,000원×6명×12월 - 조리사 : 1,985,900원×100%×1명×12월 -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 : 57,325천원 (18명 총 인건비 9.65% 적용)	(평균 호봉) 원장 20호봉 교사 8호봉 조리사 10호봉	347,175
어린이집 환경개선	교재 교구비	- 61인 이상 : 680천원	시설규모별 지원	680
	냉난방비	- 90인 이하 : 1,193천원		1,193
	보육장비비	- 61~100인 이하 : 360천원		360
교사수당	담임교사 지원비	- 교사 : 240천원×5명×12월	영아반교사 야간연장	14,400
	누리과정 교사수당	- 교사 : 360천원×5명×12월	유아반교사	21,600
	처우 개선비	- 영아,야간연장 : 170천원×5명×12월 - 유아,장통 : 90천원×5명×12월 - 원 장 : 310천원×1명×12월	원장 및 교사	19,320
	격려수당	- 교사 : 80천원×10명×12월	교사	9,600
	원장학습 운영비	- 원장 : 50천원×1명×12월	원장	600
	교직원 명절수당	- 교사 : 50천원×10명×2회	교사	1,000
영유아보육료		- 영아(1세) 426천원×10명×12월 - 영아(2세) 353천원×12명×12월 - 장애아 502천원×6명×12월 - 유아(3~5세) 260천원×40명×12월 - 누리과정운영비 55천원×46명×12월	연령별 지원	293,256

【참고1】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계획

I 관련근거

-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II 추진방향

- ☐ 공개경쟁 참여기회 확대로 양질의 위탁체 선정
-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결과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III 세부추진계획

- ☐ 위탁대상현황

어린이집 명	소 재 지	연면적 (층수)	정원	취약보육	비고
하늘다솜	남동대로215번길 30 (고잔동)	773.4㎡ (지상1층)	85명	2개	

- ☐ 위탁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위탁체 신청자격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 또는 주사무소가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단,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음
 -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또는 대학산학협력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해 신청

【개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청인 본인이 원장이 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원장 내정자,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운영정지 15일 이상 또는 자격정지 15일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법인·단체인 경우 과거 고용 원장이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단, 고용 원장은 신청가능)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려 하거나 타인(법인, 단체 포함)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려는 자
-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종사자 보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함

- ※취약보육 인건비 미지원 시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보육료 등)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
- 위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 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체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동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당해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및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추진계획,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 취소 할 수 있음

□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심사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되며,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
- 심사방법은 집합심사로 하되 확인이 필요할 시 현장 확인 실시

□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점
■ 위탁체의 공신력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실태 등)	10
■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10
■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평가인증 참여, 아동복지업무 경력, 공모사업 실적, 운영의지 등)	35
■ 어린이집 운영계획 (보육사업계획, 운영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의 적절성 등)	40
■ 재정능력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계	100

□ 위탁체 선정방법 및 결과 공개

-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
- 신청자는 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신청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

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법인·단체의 발표자는 원장내정자로 함)

- 위원회 심사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1순위), 위탁체의 대표·어린이집 원장(내정자)의 전문성(2순위),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3순위)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단수(법인·단체 포함) 신청 시 재공고하며, 원활한 위탁업무를 위하여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단축함
-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단수일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으로 위탁 운영자 선정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 결과는 공개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IV

행정사항

-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및 동의: 2021. 2월말
- ☐ 위탁체 모집 공고
 - 기 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 공 고: 구보, 구청 및 각 동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공고문 게재
-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기 간: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접 수 처: 보육정책과(보육시설팀)
 - 접수방법: 방문 제출 (우편, 인터넷 및 대리제출 불가)
- ☐ 위탁운영 신청자 결격사유 조회
-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2021. 3월중
- ☐ 위탁계약 체결: 2021. 3월말

【참고2】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0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 구 수거환경에 적합한 안전기준 적용 및 명문화 필요
- 종량제봉투의 과도한 중량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수거원)의 근골격계 관련 질환 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거 효율화 제고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일반용 종량제봉투 100리터 제작중단 반영(안 별표 5)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계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별표 5의 “2025년”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가격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2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오전 4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

	리 기동반 작업 바.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	--

[별표 5]

종량제 봉투의 규격 · 용도 및 연도별 가격(제14조제6항 관련)

구분	2020~2024년	2025년 1월 1일부터	용 도
5 ℓ	210	23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일반용 봉투
10 ℓ	390	440	재사용 봉투
20 ℓ	750	870	일반용 봉투
20 ℓ	750	870	재사용 봉투
50 ℓ	1,850	2,170	일반용 봉투
30 ℓ	2,350	2,35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60 ℓ	4,700	4,70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15kg)			
125 ℓ	7,870	7,870	가정사업계 폐기물 봉투
(32kg)			
50 ℓ	5,500	5,500	불연성 폐기물 마대
(13kg)			
50 ℓ			공공용 봉투
100 ℓ			공공용 봉투

비고 :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가격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 마련과 종량제 봉투의 과다한 중량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수거원)의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수거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이 개 일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본조 신설 2019. 12. 31.]

□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19. 4. 8.)

가. 종량제봉투 종류·재질·규격 등에 관한 사항

1) 종량제봉투의 종류

- 종량제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도 구분·제작 가능
 - 일반용 봉투 용량: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 100L
 - 재사용 종량제봉투: 3L, 5L, 10L, 20L, 30L
 - 공공용 봉투 용량: 30L, 50L, 100L
 - 1회용 비닐봉투 전용봉투 용량: 3L, 5L
- 일반용 봉투는 발생원을 고려,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용”으로 구분하여 제작·공급 가능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1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공백 또는 법령 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ℓ) 추가

☐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안 제2조제1항제3호)
- 상위법령의 서식에 관한 인용규정을 정비함 : (안 제16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1년으로 변경함 : (안 제17조)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규격(1ℓ) 추가 : (별표 3)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안 제1조 등)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식물 등”을 “음식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제3조 중 “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다량배출사업자”로, “위한”을 “위하여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장”을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위한”을 “위하여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조제3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를 “다량배출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이 경우”로, “신고 제출”을 “제

출”로, “에”를 “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발생억제방법은”을 “발생 억제를 위하여”로, “호와 같다”를 “호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대해보완”을 “대하여 보완을”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원화”를 “재활용”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조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를 “다량배출사업자”로,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다량배출사업장은”을 “다량배출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을 “음식물류 폐기물

을 스스로 감량하는”으로, “발효건조에 의하여”를 “발효건조나”로, “소멸화하여”를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발생된”을 “발생한”으로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를 “다량배출사업자”로,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제2조제3호”를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변경신고서”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소재지를 변경한”을 “소재지가 변경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기별로”를 “연”으로 한다.

제22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및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제9조제3항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구 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판매 가격	100원	200원	300원	500원	1,000원	2,000원
판매 수수료	7원	14원	22원	36원	72원	144원
봉투규격 (가로-세로,cm)	15×17	19×22.9	22×26	26×31	33×40	41×49

※ 판매수수료(이윤)는 판매가격에 포함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구 분	무게(kg)	부피(ℓ)
공동주택 단위무게 당 수수료	100원	100원

○ 음식물류 폐기물 비중 1.0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발생한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다음과 ----- -.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들을 말한다.	1. ----- ----- ----- 음식물-----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4. ~ 6.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
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점과 일
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
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
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 범위) -----

-----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
출사업자-----

위하여 시행하는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생략)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
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
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를 위한 노력) ①·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주민 등(단체를 포
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및
포상 할 수 있다.

④ 제2조제3호의 사업장을 운영
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
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
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제7조(주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 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 위하여 시행하는 -----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를 위한 노력)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범위-----
-----.

④ 다량배출사업자-----

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

---. 이 경우---

제출---

-----를-----.

⑤ 다량배출사업자는 -----
----- 발생 억제를 위하여
--- 호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제5호 또는 제12호) ----

⑥ -----다량배출
사업자-----

----- 대하여 보완을 ---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④·⑤ (생략)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표 3-----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 및 이물질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생략)

④·⑤ (생략)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생략)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위생관

1. -----
-- 재활용 -----

-----.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량배출사업자----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리를 위하여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범위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② 다량배출사업자

법 제13조제1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스스로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2.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항-----

-----.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2. ----- 다량배출사업자는 -----

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할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
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
정하여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
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
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
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
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
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
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
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
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
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

--. -----

-----.

3.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

-- 발효건조나 -----
----- 부속의 방법으
로 처리하여 -----
-----.

4. ----- 발생한-----

-----.

제16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
항) 다량배출사업자-----

- 다음 -----
-----.

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신고

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

2. 3. (생략)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작성하여 2년간 보

1. -----

--.

가.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의10서식---

나.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2. 3. (현행과 같음)

4. -----

----- 시행규칙 -----

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
지 제4호의3서식의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변경신고서에 변
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
지를 변경한 경우

나.·다. (생략)

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
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법 시
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또
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6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
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
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

-----.

5. -----

-----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
호의11서식-----

-----.

가. ----- 소재
지가 변경된 --

나.·다. (현행과 같음)

6. -----
----- 시행규
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
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점검) -----
----- 연 -----

-----.

1.·2.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규정) -----

----- 따
른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조례 규정 속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서식에 관한 인용규정을 정비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을 위한 지도·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관련 새 규격을 설정하여 구민편의를 높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이 개 일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4. (생략)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11. (생략)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14. (생략)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나.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한 경우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재활용 또는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5.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및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가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나.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9.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10. 분진·소각재·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12. 폐산·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장치 등을 갖추는 것

나.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약품·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

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 9. 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 9. 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9.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3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2
----------	------

제출년월일 :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 이유

-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등의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 규정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 코로나 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재난·재해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 재정지원 방안으로 옥외광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수수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안 제31조제2항)
-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면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1조제3항제5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수료) ① (생략)	제31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 ----- ----- ----- -----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삭 제>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삭 제>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삭 제>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 -----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
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 정비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도시경관과장 최용석

[참고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남동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가 소인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45호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조항에 따라 남동구 실정에 맞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안 제3조)
- 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및 교육 교재(안 제5조)
- 교육실시 방법(안 제6조)
- 교육강사(안 제7조)
- 교육통지서 송부(안 제8조) 및 교육이수자 관리(안 제9조)
- 교육의 위탁(안 제10조)
- 교육의 보고(안 제11조)
- 교육불참자 조치(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 ☎ 453-6262, FAX 453-213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제정조례(안) : 별첨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및 제11조)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사항(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보고) 제10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

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58호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가산금 징수 완화로 구민과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정비 (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하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가산금 완화 (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방재하수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3층 방재하수과 (만수동, 남동구청)
- 연락처: ☎ 453-8414, FAX 453-840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별첨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
- 지하수이용부담금 채납 가산금 징수 완화로 구민과 중소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 주요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 정비 : (안 제16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채납 가산금 완화 : (안 제18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하수법」 제30조3제1항 및 제4항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지하수법 시행령」”을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3조”를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로 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기는 「규칙」 제17조”를 “시기는 시행규칙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규칙」 제17조제2항”을 “다만,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제3장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운영”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중 “임·직원”을 각각 “임직원”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의 관리”를 삭제한다.

제12조제6호 중 “지하수법”을 “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제15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으로 한다.

제18조 중 “5”를 “3”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5장 벌 칙”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6장 보 칙”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장 총칙</u>	<u><삭제></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1. -----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 ----- -----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u>제2장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u>	<u><삭제></u>
<u>보전·관리</u>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호 이외의 부분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 한다.

1. 2. (생략)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이행보증금의 금액과 예치 시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2. (생략)

제3장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시행규칙”-----

-----.

1. 2. (현행과 같음)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 시기는
시행규칙 제17조-----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생 략)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생 략)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
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생 략)

③·④ (생 략)

제4장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의
관리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예
산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조성한다.

1. ~ 5. (생 략)

6.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원상복
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
탁한다.

7. (생 략)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예
산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

1. ~ 3. (현행과 같음)

4. -----

-- 임직원

5. (현행과 같음)

6. -----
----- 임직원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제12조(세입)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

-----.

7. (현행과 같음)

제13조(세출) -----
-----.

1. 법 제30조의2제4항 각 호의

지 제8호

2. 3. (생 략)

제15조(사무취급 예)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 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⑤ (생 략)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2. 3. (현행과 같음)

제15조(사무취급 예) -----

--- 따른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수이용부담금 사용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산금) -----

----- 3-----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장 벌 칙

제6장 보 칙

-----.

<삭 제>

<삭 제>

[관련 법령]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370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 2021.2.17. ~ 2021.3.3.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28우8557외 7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 번호	차량등록 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473	28우8557	아반떼(AV ANTE)	조*상 /8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안길 1*, **4호(본*동, 씬**빌)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2.1.	대전 중구 (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세무과) 경기 일산동구 (교통안전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세무1과, 안산시차량등록사업소, 상록구 세무2과, 상록구 경제교통과)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대전지방법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2020-00515	14서3073	A6 3.0 TFSI quattro	임*웅 /62****	경기도 시흥시 포****9번길 1*, **2호(신*동, 대**크)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2.1.	경기 시흥시 (징수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경기 부천시 (주차지도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교통행정과) 서울 서초구 (주차관리과) 시흥경찰서 수원지방경찰청안산지청 (집행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사) 신한카드(주)
2020-00517	80서1514	봉고III 1톤	(주)비***이비 /1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로 **0, 파***빌딩 *층(방*동)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2.2.	서울 송파경찰서 서울 송파구 (환경과, 맑은환경과, 세무2과, 녹색교통과)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인천 남동구 (세무과) 인천 연수구 (차량민원과)
2020-00522	65어2807	BMW 730Li	최*준 /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5번길 *0, **2호(주*동, 리***열타워)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1.24.	경기 수원시 (장안구세무과, 자동차관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인천남부지사) 경기 광명시 (세정과) 경북 포항시 (남구세무과, 차량등록과, 북구건설교통과) 경기 고양시 (징수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세원관리과) 서울 송파구 (주차관리과) 경기 부천시 (주차지도과) 서울시 (교통정책과) 서울 중구 (주차관리과) 서울 구로구 (주차관리과) 서울 노원구 (교통지도과)

						서울 서초구 인천 부평구 (주차지도과) 서울 동작구 (교통지도과) 포항 남부경찰서 대구 서구(세무과) 부산시 동래구 (교통과)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 미추홀구 (세무2과)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2020-00523	39마6295	카니발 II	양*석 /8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길 *, **3호(두*동, 팸***아)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11.17.	충남 홍성군 (건설교통방재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홍성경찰서 부산 수영구 (교통행정과) 충남 보령시 (도로교통과) 인천 미추홀구 (교통민원과) 인천시 (교통관리과) 인천 서구 (주차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서울 중구 (주차관리과) 인천 연수구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사회복지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서울 중구 (주차관리과) 충남 아산시 (환경보전과) 인천 중구 (교통운수과)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	
2020-00527	13주6378	포르테	전*익 /79****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6번길 *1, ***1호(부*동, 미*클)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12.3.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2020-00532	08고8308	라세티1.6 D AT	김*미 /82****	충청남도 서산시 지*면 충*로 7**-*8, **0동 ***5호(늘** **카빌)	(주)인천 폐차사업소 /2020.12.1.	인천 연수구 (세무2과, 차량민원과)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충남 서산시 (세무과, 교통과) 서산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인천남동경찰서 KB캐피탈	
2020-00582	69누3805	무쏘	조*우 /66****	전라남도 완도군 고*면 고**로 **0	기전산업(주) 폐차사업소 /2020.12.10.	전남 완도 (세무회계과, 환경산림과) 인천 남동구 (교통행정과) 완도경찰서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24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7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25-3 (고잔동) 외 5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25-3 (고잔동)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9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 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8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25-3 (고잔동)	2009.11.16.	인근지역에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호수, 소래포구, 습지생태공원 등의 친환경적 입지를 고려하여 제명	2021.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 25-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3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3-7, 33-8, 산33-9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골로 29-1 (운연동)	2009.11.16.	연락골이라는 옛 지명을 인용하여 제명	2021.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연락골로 29-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9-1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165 (서창동)	2014.06.02.	인천 남동구 서창동과 경기 시흥시 방산동의 각각 법정동 명칭을 이용하여 명명함	2021.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방산로 16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80-7 (만수동)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214번길 80-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0-7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2-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74-7 (만수동)	2009.11.16.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백범로214번길 74-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4-7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42-9, 11, 12, 14, 15,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 (만수동)	2009.11.16.	서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2.1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판로64번길 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코중앙로 25-3 (고잔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80-4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80-6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80-8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74-7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74-5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74-3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76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80-7 (만수동)	2021.2.17.	신축으로 인한 기존건물 말소	